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

□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?

-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고, 해당 산재근로자를 치료 후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□ 어떤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?

- 산재발생사업장 중 재해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
 - 첫째, 산재발생이후 대체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,
 - 둘째, 산재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산재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실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
□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가?

-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동안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
 -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시작일은 대체근로자 채용일이며, 지원종료일은 대체근로자 퇴직일 또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일, 치료종결일 중 빠른 날임
 - 지원금액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50%이며, 월 60만원 이내임

□ 지원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?

-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직장에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,
 -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에 지원금청구서 및 구비서류*를 접수하면 자격심사 후 지급 결정
- * 구비서류 : 대체인력·산재근로자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출근부, 통장사본 등

❖ 대체인력 구인이 필요한 경우 「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」 (www.대체인력뱅크.com ☎ 1577-0221)로 문의하시면 구직자 알선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